『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

거가 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타 복지영역에 비하여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거주, 취업, 평생교육, 권익옹호, 위기지원 등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회복과 재활을 통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질병과 그에 대한 치료의 관점으로만 바라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재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정신질환자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의 보호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자치구에 대한 지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조, 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또는 개정했습니다.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